

# 16. 재학조교 채용 규정

제정일 : 2007년 9월 12 일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(이하“ **본교**”라 한다) 학생의 교육 및 연구의 수련과 또한 장학의 한 방도로서 재학조교의 제도를 두고 자격기준과 채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종류)** 재학조교는 사무조교(강의, 기타 사무보조), 연구조교(개인교수 의 연구보조)로 구별한다.

**제3조(의무)** 재학조교는 해당교수의 지도하에 주당 12시간 내외로 교수의 연구 활동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장학금의 급여)** 재학조교중 사무조교는 **본교**에서 조교장학금을 지급 하며, 연구조교는 해당 **연구소 및** 교수의 연구비에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5조(자격)** **본교** 학생으로서 정규 등록자에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6조(신청)** 재학조교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학생처장을 경유하여 소정 기일 내에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**본교** 소정의 신청서 1매
2. 사진(반명함판) 1매
3. 최종졸업증명서 1통

**제7조(심사)** 학생처장은 신청자의 입학 또는 재학성적, 인품, 재신청의 경우 전학기의 근무 태도에 관한 해당교수와 근무예정기관의 의견을 참작 하여 임명여부를 결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.

**제8조(임명)** 학기마다 학생처장에 의해 추천된 자는 총장이 재학조교로 임명 한다.

**제9조(임명취소)** ①재학조교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자는 해당교수 또는 근무기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재학조교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 임명이 취소된 자는 장학금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07년 3월 1일로 소급 시행한다.